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윤리실천규범”을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2】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	제1조(목적)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 .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2)	제2조(윤리강령) ----------**【별표1】 과**--- .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12.2.>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겸직신고)**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2】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1】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별표2】

지방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table>
<tr><td colspan="2">소 속 정 당</td><td></td><td rowspan="2">선거구분</td><td>지역구</td><td></td></tr>
<tr><td rowspan="2">성명</td><td>한 글</td><td></td><td>비례대표</td><td></td></tr>
<tr><td>한 자</td><td></td><td colspan="2">생 년 월 일</td><td></td></tr>
<tr><td rowspan="5">겸직내용</td><td>기관
단체명</td><td colspan="4"></td></tr>
<tr><td>직 위</td><td></td><td colspan="2">재 직 기 간</td><td></td></tr>
<tr><td>보 수</td><td></td><td colspan="2">전 화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able>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